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109
----------	------

제출년월일 : 2011. 4. //
제출자 : 안산시장

개정이유

-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전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법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제액을 조례에서 규정함.

주요내용

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5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

- ▶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나.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함(안 제17조)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10.12.27.일부개정, 법률 제10417호)
-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30조 제1항 및 제74조의2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1. 03. 30. ~ 2011. 04. 07.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전문)
- 조례 개정 회의결과 공문 (경기도 세정과-4252, '11.2.28)
-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으로 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납부를 위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 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7조 중 “제3항” 을 “제5항” 으로 한다.

제20조 중 “둔 경우에는” 을 “두었으면” 으로 하고, 제21조 중 “적용되는 경우에는” 을 “적용될 때에는”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박 용 턱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배 순 철
	담당자 성명·전화	신 운 호 (행정 219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u>두었으면</u>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별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u>적용될 때에는</u>